

2018 한국금융학회 춘계 정책심포지엄 금융회사 기업지배구조

토론 자료



한국금융연구원 은행·보험연구실
이시연

I. 은산분리 이슈 (1)

- ◆ 지배주주 존재 허용 여부와 지배주주의 identity 제한 문제는 구분이 필요
 - 해외에서 부보 금융회사에 대해 지배주주 존재를 허용하는 사례는 다양하며, controlling family가 존재하는 은행도 종종 존재
 - 그러나 지배권을 취득·보유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제약
 - 특히 은행업과 비금융업의 분리 원칙은 여전히 지배적

I. 은산분리 이슈 (2)

- ◆ 미국: “separation of banking from commerce” 원칙은 계속 유지
 - 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: 은행주주에 대해 은행업과 밀접한 영업행위에만 한정하도록 규정
 - GLBA 1999: Commercial firms와 S&L의 결합이 가능한 규제 loophole 제거, 다만 일부 기존 회사들에 대해 grandfathering 적용
 - Dodd-Frank Act: 1987 CEBA*에서 예외를 적용받았던 ILC (industrial loan companies)**에 대한 예금보호 적용을 금지
 - * 1980년대 상업용대출과 요구불예금 중 하나만 하는 “non-bank bank”가 지주회사법 규제 범위에서 벗어나는 loophole을 해소
 - Federal Reserve, FDIC & OCC, “Report to the Congress and the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-Pursuant to Section 620 of the Dodd-Frank Act”, September 2016): “Grandfathering exemption”등 은행업과 상업 간 분리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들을 폐지할 것을 건의

I. 은산분리 이슈 (3)

- ◆ 부보 금융회사이며 공적구제 가능성이 있는 은행 등은 지배주주의 이익과 손실 분담간 괴리가 더욱 커질 수 있음.
- 정상 경영상태에서 은행 지배주주가 향유 가능한 이익= 소유권 이익(배당 및 주가 이익- 동질적)+ 지배권 이익 (배타적)
- 그러나 부실시 비용은 지배주주 뿐 아니라 기타 주주,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분담
- 부보 금융회사이며 공적구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일반 납세자도 잠재적 비용 분담자이며 지배주주 관점에서 괴리가 더 심화
 - ⇒ 지배주주의 의사결정 왜곡
 - ⇒ 금산분리/은산분리: 부보 금융회사 여부를 포함한 공적구제 가능성 측면에서 추가적 판단 필요

I. 은산분리 이슈 (4)

◆ 지배주주의 유인

①(직·간접) 소유권에 비례하는 이익(예. 배당, 주가 수익)과 ②지배권 이익의 합을 극대화

i.e.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은 $(1-w) * [\text{① performance, firm value}] + w * [\text{② private benefits of control}]$ 의 극대화 동기를 반영

- ①은 모든 주주가 누릴 수 있는 동질적인 shared benefit
- ②는 지배주주만이 누릴 수 있는 unshared, exclusive benefit
- w 는 지배주주의 지배권(control right)과 소유권(ownership right)의 차이를 반영하며, 지주회사 구조인 경우 최소화 가능
- ①의 극대화에는 반하나, ②를 증가시킴으로서 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금융회사에 유리한 의사결정 가능성

Ⅱ. CEO 및 이사 선임 이슈 (1)

1) 이사에 대한 적극적 요건 강화 이슈

- ◆ 현재 **사외이사**에 대해서는 전문성 요건 적용:
“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금융, 경제, 경영, 법률,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 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”
 - 다만,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전문성 외 기타 적극적 요건 (예. 도덕성/평판, 직무 무 전념성 등)은 부재
- ◆ **대표이사 및 기타 사내이사**에 대해서는 임원에 대한 (소극적) 결격사유만 규정

II. CEO 및 이사 선임 이슈 (2)

① 대표이사

- ◆ 지배구조 개선안(2018.3.)은 CEO에 대해 적극적 자격요건을 마련하도록 제시
 - “최고경영자가 금융전문성, 공정성, 도덕성, 직무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법률상 의무화“
 - “구체적 자격요건은 금융회사가 지배구조내부규범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여 공시·운영”
- 금융전문성: i.e) 최소 이론적 배경 & 실무적 경험 요건
공정성?
도덕성?
- ◆ 또한 CEO 후보자군 적정성 평가 및 후보군 관리 내역 주주 보고 의무화
 - 더 나아가 “Say on Succession Planning”도 가능?: 주주의 관심 및 경영승계에 대한 engagement 활성화 등 유도

II. CEO 및 이사 선임 이슈 (3)

② 대표이사 외 사내이사 (집행이사)

- ◆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수행하는 기능의 특성, 중요성에 따라 보다 많은 적극적 요건을 요구할 수 있음.
- 예를 들어 해외에서 수행 기능에 따라 차별화된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 요건 등을 검증하는 사전적 임원 적격성 심사의 범주에는 (ECB)“경영(집행) 및 감독(비집행) 기능을 담당하는 모든 주체”, (영국) 고위 경영기능 수행자 (“Senior Management Functions”*)가 모두 포함
 - * CEO, CFO, 집행이사, CRO, 내부감사 Head, 비즈니스 부문장, 그룹 고위경영진, 이사회 의장,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장, SID, 비집행이사, 준법감시담당자, 자금세탁보고 담당자 등
- 감사위원의 전문성 요건도 이러한 차원에서 강화할 수 있을 것

II. CEO 및 이사 선임 이슈 (4)

<참고> ECB 적격성 심사시 최소 경험 요건

[경영기능]

| CEO | 이사 |
|--|--|
| 최근 (12년 이내) 10년 이상 은행업 또는 금융업 분야 실무 경험. 이 중 상당 부분이 최상위 경영진 포지션 | 최근 (12년 이내) 5년 이상 은행업 또는 금융업 분야에서 최상위 경영진 포지션으로서 실무 경험 |

[감독기능]

| 의장 | 이사 |
|--|--|
| 최근 기간 동안 10년 이상 관련 실무 경험. 최상위 경영진 포지션 기간과 은행업 또는 유사 관련 분야에 대한 상당한 이론적 경험 | 상위 경영진 포지션으로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험 (은행업 이론적 경험 포함), 공공 또는 학문 분야의 실무 경험도 포지션에 따라 고려 가능 |

II. CEO 및 이사 선임 이슈 (5)

③ 사외이사 (비집행이사)

- ◆ 사외이사의 (경영진으로부터의) 독립성
 - 대표이사의 임추위 참여 배제, 사외이사 2/3 이상 구성 (지배구조 개선안)
 - 결국 사외이사의 주주대표성/독립성이 관건

- ◆ 사외이사의 적극적 요건 강화 필요성?
 - 전문성 외에도 도덕성/평판, 공정성, 충실성 등 평가 필요?
 - And/or 기존 전문성 요건의 강화?

- ◆ 이사회 다양성 강화
 - 지배구조 개선안은 이사회 집합적 정합성(Collective Suitability) 제고를 요구
 - 집합적 정합성의 정의는? 구체적 구성요소(Board Skill Matrix)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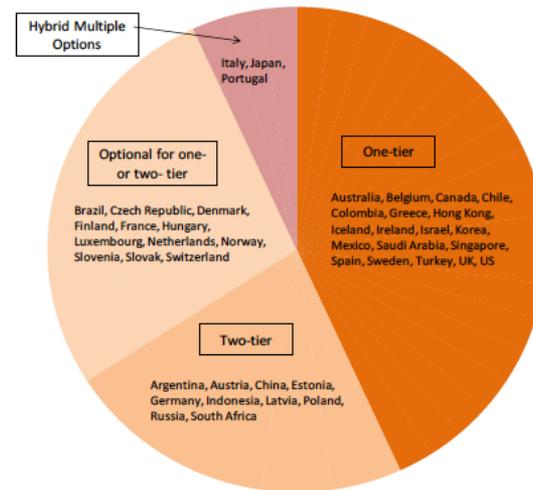
II. CEO 및 이사 선임 이슈 (6)

- ◆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주주대표성 vs 이해관계자 대표성
 - 서로 다른 주주집단 간 (지배주주와 소액주주),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 간 이해관계는 항상 다를 수 있음.
 - 지배구조 개선안은 “사외이사 후보자군 선정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 추천 인재 pool을 반영하기 위한 기준 마련 의무화” 제시
 - 외부인사로 구성된 ‘후보추천관리위원회’의 후보 선정: 주주이익 극대화와 정치적 독립성 보장이 가능?: 보완 기제 필요

II. CEO 및 이사 선임 이슈 (7)

2) 노동/근로자추천이사제 문제

- ◆ 유럽에서 다수 관찰되는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개별 국가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사회내 다양성 측면에서 수용 (ECB)
- 다만 노동/근로자대표이사는 이원화된 이사회(경영과 감독 분리) 시스템 하에서만 존재



자료: OECD

- 근로자추천 이사도 사외이사로서 일정수준 이상 적극적 요건(i.e. 전문성)을 만족할 필요
- ◆ 기타 이해관계자 집단의 추천 문제는?

Ⅲ. 기타

1)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문제

- ◆ 기업의 반대 논리를 포함한, 일부 대응이 필요한 이슈들이 존재
 - 국내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소유지배구조적 측면과 잠재적 이해상충, 비용: 독립적, 전문적 의사결정의 실효성 저해
 - 내부 의사결정 합의제 기구 설치: Practicable?
 - 의안분석서비스 시장: premature (전문성, 공정성 확보 문제)
 - 연기금: 보다 장기적 투자 가능 및 계열·경쟁 관계 등으로부터의 독립성은 장점. 정치적 독립성 확보는?

2) 대주주적격성 심사

- ◆ 규제 일관성 확보 필요
 - 은행에 대해서도 심사 기준을 통일